

# 비전임교원

-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sup>[1]</sup>
-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 명칭

구분	영문명	중 문 명	설명
<a href="#"> 명예 교수</a>	Emeritus Professor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 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나 20년 미만 근무 한 자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 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 이 높아 명예적으로 추대된 교 원

수석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평 많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수석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수석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수석교수	Distinguished Professor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 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 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외 부인사로서 학교 발전 에 공헌하도록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수석교수	Visiting Scholar Professor	본교와 전담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임 점의 우수자로서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기의 취의 정년 이후에 위촉 된 교원
수석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국내 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 위를 소지한 학자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할 경 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연구년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또는 논문지도 등을 담 당하도록 초빙된 교원. 다만, 기관간 협약에 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수석교수	Honorary Professor	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탁에 의해 조 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 헌하도록 총장이 부여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수석교수	Research Faculty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전문교원으로 근무하 고 퇴임했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이유로 초빙 된 교원
수석교수	Research Professor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 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 원으로 연구수행을 위 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 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수석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소속 학과(부)의 심의 와 소속대학(원)장 도 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 촉
수석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수석교수	Researcher	
수석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산업체경력자로서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초빙된 교원
수석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SW)	SW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직무에 증사 한 경력이 있는 자
수석교수	Institute Adjunct Professor	본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
수석교수	Clinical Professor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 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 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 예교수, 임상교원, 임 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

<u>겸임</u> <u>교수</u>	Adjunct Professor	교외 전문기관 또는 산 업현장, 기업경영 등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 중인 자로 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을 담당하도록 겸직 임 용된 교원
<u>시간</u> <u>강사</u>	Part-time Lecturer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 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 하도록 위촉된 교원

1. [↑](#) 비전임교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년 9월 7일 및 2012년 11월 23일
2. [↑](#) 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